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8.10.24.행정소방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년 10월 6일

충청북도지사

2. 회 부 일 자 : 2008년 10월 8일

3. 상정 및 의결일자 제275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소방위원회(2008. 10.22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·토론, 심사의결(원안)

Ⅱ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곽임근)

1. 제안이유

- 우리 道 조직개편(2008. 7. 1.)에 따라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,
-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위탁대상기관을 산업단지별로 규정하던 것을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신속한 위탁업무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

- "혁신담당관" ⇒ "성과관리담당관"
- "정보통신담당관" ⇒ "정보화담당관"
- "경제정책팀" ⇒ "경제정책과"
- "전략산업팀" ⇒ "전략산업과"
- "기업지원팀" ⇒ "기업지원과"

나. 산업단지 관리업무 및 위탁대상기관의 포괄적 지정(기업지원과)

○ 산업단지 관리업무와 위탁대상기관을 산업단지별로 규정 하던 것을 신속한 위탁업무 추진으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지정

Ⅲ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소방전문위원 유영창)

1. 개정개요

개정조례안은 충북도의 조직개편(2008.7.1)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,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 중 산업단지 관리업무와 위탁대상기관을 산업단지별로 규정하던 것을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.

부서명칭 변경은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해가 되며, 산업 단지 관리업무 및 위탁대상기관의 포괄적 지정은 신속한 행정처리 를 위해 조례 개정절차 진행에 따른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 으로, 일정부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.

2. 타 시도 사례

위탁대상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타 시도의 조례를 조사해 보면, ①울산광역시·충청남도·전라남도는 포괄적 지정방식을, ②부산광역시·경상북도·경상남도는 수탁기관 지정방식을 취하고 있고, ③서울특별시·광주광역시·대전광역시·강원도는 위탁기관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있으며, ④대구광역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·전라북도·제주특별자치도는 위탁사무와 위탁기관을 별표에 규정하지 않고 사안별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.

3. 검토의견

기본적으로 조례 등 법규문서에 포괄적 규정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으나, 금번에 제출된 산업단지 관리업무와 위탁대상기관의 포괄적 지정은 관련 법률인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0조(관리권자 등) 제②항 제3호와 제4호에서 규정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로 한정하고 있고, 이 같은 포괄적 규정으로 신속한 행정처리를 통해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공백을 방지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겠음.

다만, 의회와의 업무공유 및 간접통제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는 체제를 갖추는 등 포 괄적 지정에 대한 보완방안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 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"생략"

V. 토론요지 : "생략"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Ⅷ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IX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O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민 간 위 탁 사 무

대상실과	일련 번호	위탁대상사무명	위탁대상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		
성과관리 담 당 관	1	ㅇHappy Call센터 운영사무	콜센터 구축 및 운영대행 전문기관	지방자치법 제104조		
정당 당 공	2	○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에 관한 사항 - 인터넷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 - 영상콘텐츠 제작·공급 - 도정실황 입체적인 영 홍보 - 기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항 등	(재단법인)충청북도 지식 산업진흥원	지방자치법 제104조		
경제정책과	3	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다음 사무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대한 상금 지급 지방기능경기대회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	한국산업인력공단충북 지사	기능장려법 제11조, 제3조 제15조, 제22조 동법시행령 제36조		
전략산업과	4	o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 - 충북과학기술 혁신대전	과학기술관련법인	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40조제2항, 제56조 동법시행령 제48조제3항		
	5	○ 민속공예산업 육성사무 - 도 공예품경진대회	도내 공예단체 및 법인	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 동법시행령 제54조		
기업지원과	6	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사무 - 중소기업우수상품전 개최	청주상공회의소,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충북지회	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 40조제2항, 제56조 동법시행령 제48조제3항		
	7	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(다만,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임대사무를 포함한다.)	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	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,제31조, 동법 시행령 제5조		

신・구조문대비표

【별표】

민 간 위 탁 사 무

현 행					개 정 안					
대상 실과	일편 번호	위탁대상사무명	위 탁 대상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	대상 실과	일련 번호	위탁대상사무명	위탁대상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	
<u>혁</u> 신 담당관	1	(생략)			<u>성과관리</u> <u>담 당 관</u>	1	(현행과 같음)			
<u>정보통신</u> <u>담당관실</u>	2	(생략)			<u>정보화</u> 담당관	2	(현행과 같음)			
<u>경제정책팀</u>	3	(생략)			경제정책과_	3	(현행과 같음)			
전략산업팀	4	(생략)			<u> 전략산업과</u>	4	(현행과 같음)			
	5	(생략)				5	(현행과 같음)			
<u>기업지원팀</u>	6	(생략)			기업지원과_	6	(현행과 같음)			
	7	○산업단지 관리권한 에 관한 사항 ·청주지방산업단지 ·현도지방산업단지 ·부용지방산업단지 ·대소산업단지	청주지방산업단 지관리공단 현도지방산업단 지입주기업체협 의회 부용지방산업단 지입주기업체협 의희 대소지방산업단 지입주기업체협 의희 대통지방산업단 지입주기업체협 의희 대풍지방산업단 지입주기업체협	산업집적활성 화및공장설립 에관한법률 제 30조, 제31조		7	○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(다만 오창과학산업단 지는 임대사무 를 포함한다.)	산업단지관리공 단 또는 입주기 업체협의회	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1조, 동법 시행령 제5조	
		· 오창과학산업단지 (공단임대시무 포함								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- 제104조 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 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151조 (사무의 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위탁의 당사자가 시·도나 그 장이면 행정자치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
 - 2.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
 - 3.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

- 4.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
- 5.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- 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사무위탁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관계 지방 자치단체나 그 장과 협의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고, 제1항의 예에 따라 행 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규약에 다르게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
제30조 (관리권자등) ①관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국가산업단지는 지식경제부장관
- 2.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)
- 3. 농공단지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
- ②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- 1. 관리권자
- 2.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
- 3.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산업단지관 리공단
- 4.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입주기업체협의회
- 5.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(일반산업단지·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 업무에 한한다)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
- ③~⑤ (생 략)

제31조(산업단지관리공단등)①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②산업단지관리공단(이하 "관리공단"이라 한다) 또는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(이하 "입주기업체협의회"라 한 다)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③~⑤(생략)

⑥관리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관리 관리기 관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5조 (산업단지의 관리업무) ①법 제2조제8호 본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"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.

- 1.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(이하 "관리 기본 계획"이라 한다)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
- 2. 공공시설,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
- 3. 산업용지의 매각·임대,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
- 4.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·아파트형공장 기타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
- 5.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·전기·증기·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 한 업무
- 6.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·유지·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에 관한 업무
- 7.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
- 8.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·기술·인력·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
- 9.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
- 10.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
- 11. 기타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
- ②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"이라 함은 다음 각호

- 1. 도로·환경오염방지시설·용수공급시설·정보통신시설·에너지공급시설 기타 의 공공시설
- 2.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입주기업체 및 지원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

제37조의2(관리업무의 위탁)①관리권자가 법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감안하여 업무 위탁의 범위를 결 정하여야 한다.

②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.